

[illegible]

화순군 공고 제2020-1699호

「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9일

화 순 군 수



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교통수단의 운행(안 제2조)

- 1일 24시간 연중무휴
- 평일 및 토요일 야간운행(19시~07시) :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
- 공휴일 : 평일 사전예약

나. 수입금 관리(안 제3조)

- 수입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
- 수입금 매분기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 조치

다. 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(안 제4조)

-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

라. 차량 유지관리(안 제5조)

- 최상의 상태 유지하여 승객 안전 보장
-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장부 비치, 기록·보존
- 운전원은 운행 중 차량 고장·사고 발생 시 수탁자 및 군수에게 보고

마. 운전자 준수사항(안 제6조)

- 차량 운행 시 이용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및 안전상태 확인

3. 의견제출

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. 12. 9.(20일간)까지 화순군수(참조: 재난안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기간 : 2020. 11. 19. ~ 2020. 12. 9.(20일간)

○ 의견제출 사항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○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ersina7@korea.kr

2) 주 소(일반우편) : (우)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
3) 팩 스 : 061-379-3810

4. 그 밖의 사항

이 시행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
(☎061-379-378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[illegible]

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)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.

1. 평일(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토요일 야간운행(19시~07시) :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

2. 공휴일 : 평일 사전예약

② 화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기상악화,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,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.

제3조(수입금 관리) ① 「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고,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
- ② 수탁자는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관리대장(별지 제7호서식)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)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차량유지관리)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(별지 제1호서식)

2. 차량에 관한 장부 등

가. 차량운행일지(별지 제2호서식)

나. 차량일일점검표(별지 제3호서식)

다. 차량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
라. 차량유류수불대장(별지 제5호서식)

마. 차량수리대장(별지 제6호서식)

3. 수입금 관리대장(별지 제7호서식)

- 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

2. 고장 또는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
3. 사고내용 신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운전자 준수사항)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4조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,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연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,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용자 준수사항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
2.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
3.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

제8조(기타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 시행에 따라 「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

[illegible]

[별지 제2호서식]

차량운행일지

[illegible]

[별지 제3호서식]

차 량 일 일 점 검 표

(년 월 일)

점 검 내 용	상 태	비 고
1) 운행전 점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? ② 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? ③ 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? ④ 각종계지 작동상태는? ⑤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? ⑥ 브레이크 장치는? ⑦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? ⑧ 조향장치 및 기타 차량 이상 유무는?		
2) 운행중 점검 ① 각부와 누설개소는 없는가?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? ③ 각종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?		
3) 운행후 점검 ① 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? ② 각부의 누유는 없는가? ③ 각종 계기 작동여부는? ④ 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?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?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? ⑦ 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?		
(기타 차량이상유무 기재사항)		
법 레 : V 양호 수리 교환	점검자 운전원	(인)

[별지 제4호서식]

차량 관리 대장

정수 번호	승인 구분	문서 번호	차 종	차 명	연 식	원동기 번호	취득 구분	등록 번호	용 도	계인 날인
		승인일	차 형	규 격				등록일	사용처	

[별지 제5호서식]

차량유류수불대장

[illegible]

[별지 제6호서식]

차량수리대장

[illegible]

[별지 제7호서식]

수 입 금 관 리 대 장

월 일	적 요	수 입	잔 액	결 재	
				배차원	센터장